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 폐기 금지 해제 및 폐기 금지 연장 요청 서식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411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중 ““하송인”(荷送人) 이란”을 ““송하인”(送荷人)이란”으로, “말한다”를 “말하며, 타인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의4제1항 중 “하송인”을 각각 “송하인”으로 한다.

제2조의5 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하송인”을 “송하인”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하송인”을 “송하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송인”을 “송하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정보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고체위험물질이 아닌 고체화물의 경우: 해당 고체화물의 품명(BCSN, Bulk Cargo Shipping Name)
2. 고체위험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이 경우 해당 고체위험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하면 그 품명 또는 명칭 앞에 “WASTE(폐기물)”라고 표기해야 한다.

가. 고체위험물질의 명칭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수록된 “포괄 품명”(generic entries: 명확하게 정의된 물질이나 제품의 그룹에 대한 품명) 또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품명”(N.O.S. entries, not otherwise specified entries)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체위험물질의 화학명칭 또는 전문(Technical) 명칭, 물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설명 및 국제연합번호. 다만, 국제연합번호 2912, 2913 및 3077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기재사항은 나목에 따른다.

나. 가목 외의 경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품명(PSN, Proper Shipping Name) 및 국제연합번호

제18조의2 중 “하송인”을 “송하인”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채취되어야 하며, 시료 채취 후 선적일 전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를 “채취해야 하며, 시료의 채취 시점과 선적 시점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린 경우 송하인은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수분함량의 측정을 받은 결과 또는 시료의 채취 이후에 화물이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화물의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 미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지체 없이 선장에게 제공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3의 고체화학위험물질의 고체위험물질의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를 방 출하는 물질	4.3	4	4	2	2	X	2	X	1	X	2	2	X	2	2	1	X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를 “Administrator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를 “Administrator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하송인”을 “송하인”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Director General of Regional Maritime Affairs & Port office”를 “Administrator of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1.2.10>

화물정보신고서**CARGO INFORMATION for Solid Bulk Cargoes**

(앞쪽)

고체화물 <input type="checkbox"/>	품명 BCSN		
고체위험물질 <input type="checkbox"/>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품명(PSN)		국제연합번호 UN No.
	화학 또는 전문 명칭 Chemical or Technical Name		
	특성을 나타내는 구체적 설명 Specific description to identify the properties of the material		
운송명/수단 Name/means of transport		운송서류번호 Transport document number	
적재항 Port/place of departure		양하항 Port/place of destination	
운송인 Carrier			
송하인 Shipper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Name/status, company/organization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주소 Address		
수하인 Consignee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Name/status, company/organization		전화번호 Telephone Number
	주소 Address		
화물 명세 General description of the cargo	화물 형태 Type of material		운송허용수분치 Transportable moisture limit
	입자 크기 particle size		선적 시 수분량 Moisture content at shipment
	총량(m/t) Gross mass(kg/tonnes)		적하계수(m ³ /t) Stowage factor
	정지각 Angle of repose		짐고르기 절차 Trimming procedures
	그룹 분류 Group of the cargo	<input type="checkbox"/> 그룹 A 및 B Group A and B	<input type="checkbox"/> 그룹 A Group A
화물의 특성 Relevant special properties of the cargo	잠재적 위험성 Specifications of bulk cargo		
	해양환경 유해화물 여부 (MARPOL 1973/78 부속서 5장 부록 I) Classification as harmful to the marine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appendix I of Annex V of MARPOL1973/78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위험물 분류 Class	고체화학물질 여부 MHB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지침 또는 그 밖의 사항 Instructions or other matters		
확인서 Declaration	위 위탁화물의 정보가 완전하게 정확히 기술되었고 본인의 지식과 신념에 비추어 기재된 시험결과 및 내용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I hereby declare that the consignment is fully and accurately described and that the given test results and other specifications are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nd can be considered as representative for the cargo to be loaded.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의 개정(2019. 1. 1. 발효) 사항을 반영하여 고체위험물질의 품명 분류에 따라 고체위험물질 운송 시 화물정보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액상화물질의 수분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후 비나 눈이 내린 경우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는 방법 외에도 화물이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화물의 수분함량이 운송허용 수분치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령 제412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3호의2 및 제27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의2. “회수압력용기”란 손상이나 결함이 있는 등 부적합한 상태인 압력용기를 회수 또는 처분하기 위해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압력용기를 말한다.
27. “중합성 물질”이란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큰 분자 또는 중합체(重合體)를 형성하여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8. “덧 포장”(OVERPACK)이란 단일 송하인이 운송 중 취급과 적재의 편의를 위해 1개 이상의 포장 화물을 하나의 단위(UNIT)로 추가 포장한 것을 말한다.
29. “제어온도”(Control temperature)란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30. “비상온도”(Emergency temperature)란 위험물의 온도 제어에 실패하여 비상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온도를 말한다.

제6조제2항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 하며, 덧 포장한 경우에는 덧 포장에도 해당 사항을 표시하고 “덧 포장(OVERPACK)” 표시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회수압력용기는 수용량이 3천 리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8조의2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해양사무소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등”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중 “관련서류”를 “위험물 명세서”로, “회수용기 또는”을 “회수용기, 회수압력용기 또는”으로, “관련 서류”를 “위험물 명세서”로, “PACKAGING)”을 “PACKAGING)”, “회수압력용기(SALVAGE PRESSURE RECEPTACLE)”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해당 위험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인 경우에는 위험물 명세서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각각 기재해야 한다.